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65

제출년월일 : 2014. 11. 2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성 : 전문분야, 일반분야

•전문분야 -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일반분야 -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

○ 인　원 : 전문분야 30인 이내, 일반분야 10인 이내

○ 자격요건

•전문분야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

-전문분야 대학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전문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분야

-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안산시 퇴직자는 제외)

-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
-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사항 : 안산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　　무

•전문분야
-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 행위 제보
-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일반분야
-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건의
-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4. 10. 21 ~ 11. 10.(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 결정문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산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안산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전문분야는 30명 이내, 일반분야는 10명 이내로 하되,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안배한다.

④ 시민감사관의 성별 구성인원은 「여성 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자격) ①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전문분야 대학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다. 전문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라.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단, 안산시 퇴직자는 제외)
   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다.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
   라.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민감사관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정)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학계,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②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촉 및 해촉)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나.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다.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라.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 행위 제보
   마.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바.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나.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건의
   다.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라.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2.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3. 경기도·감사원·안전행정부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8. 안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 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11조(제척·기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참여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참여 종료 시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관에게 제보·제안·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기한을 정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협조·지원 등) ① 수감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감사관
입	실·과장 직위·성명	감사관 정 상 래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감사계장 박 정 규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향 미 (행정 2077)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분 야)

(성 명)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귀하를 안산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 ~ 0000.00.00)

년 월 일

안 산 시 장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별지 제2호서식]

시민감사관 감사·자문 의견서

감사참여일	수감 기관	감사.자문 분야
감사.자문 요청사항		
감사자문관 의 견		
붙 임		

년 월 일

시민감사관 (서명)

안산시장 귀하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알게 된 비밀, 개인정보 및 그 밖에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2.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한다.

3.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안 산 시 장 귀하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별지 제4호서식〕

시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 감사분야 :

□ 감사기간 :

□ 대상기관(부서) :

□ 주요 감사사항

□ 감사결과

ㅇ 위법부당사항

ㅇ 행정운영상

ㅇ 개선사항

ㅇ 수범사항

□ 그 밖의 건의사항

년 월 일

시민감사관 : 성 명 (인)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별지 제5호서식]

시민감사관의 제보·제안·건의서

<table>
<tr><td>건 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시민감시관</td><td>성 명</td><td colspan="2">(서 명)</td><td>전 화</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td><td>기 관 명</td><td colspan="2"></td><td>관련부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관련공무원</td><td>소 속</td><td colspan="4"></td></tr>
<tr><td>직위.직급</td><td colspan="2"></td><td>성 명</td><td></td></tr>
<tr><td colspan="7">제 보 . 제 안 . 건 의 내 용 (사실내용)</td></tr>
<tr><td colspan="7"></td></tr>
<tr><td colspan="7">제 안 . 건 의 에 대 한 처리방법.의견</td></tr>
<tr><td colspan="7"></td></tr>
<tr><td colspan="7">상기 사항을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7">※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td></tr>
</table>

감사관 전양희 2014-11-20 11:35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65

제안년월일 : 2014. 12. 10.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과 해촉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현재의 기관명칭을 사용하고 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함.

□ 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제1호마목을 수정하여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

(안 제3조제1항제1호마목)

○ 안 제5조제3항제5호를 수정하여 시민감사관의 해촉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

(안 제5조제3항제5호)

○ 안 제8조제3호를 수정하여 현재의 명칭인 "행정자치부"로 함.

(안 제8조제3호)

○ 안 부칙 제2조를 수정하여 "시행 전에 위촉된"을 "시행 전에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으로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

(안 부칙 제2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09:59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제5호 중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안 제8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시행 전에 위촉된”을 “시행 전에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으로 한다.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09:59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자격) ① (생략) 1. (생략) 가.~라. (생략)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생략) 가.~라. (생략) ②~③ (생략)	제3조(자격) ①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가.~라. (원안과 같음) 마.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원안과 같음) 가.~라. (원안과 같음) ②~③ (원안과 같음)
제5조(위촉 및 해촉) ①~② (생략) ③ (생략) 1.~4. (생략)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촉 및 해촉)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1.~4. (원안과 같음) 5.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 (생략) 1.~2. (생략) 3. 경기도·감사원·안전행정부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4.~9. (생략)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 (원안과 같음) 1.~2 .(원안과 같음) 3. ----------행정자치부 ---------- 4.~9. (원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 시행 전에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66

제출년월일 : 2014. 11.2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조직 강화, 대부도 개발·육성, 평생학습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정의 비전에 부합하고,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른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급증하는 도서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4급 사업소 「평생학습원」을 신설함.(안 제2조)

- 평생학습원 內 평생교육과,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편제

나. 대부도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대부해양관광본부」로 개편함.(안 제2조)

- 대부해양관광본부 內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편제하고,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는 본청에 편제함.

다. 시민들이 알기 쉽고, 시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도록 국(局)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 행정국→안전행정문화국, 주민복지국→시민복지국, 안전도시국→도시주택국

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6기 정책방향에 맞게 「안전총괄과」의 명칭을 「안전사회지원과」로 변경하여 안전행정문화국에 재편함(안 제7조)

- 신속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가능
- 안전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배치(2015. 채용예정)

마.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감·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과」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제10조)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19

바. 기구조정 내용(요약)

○ 4급 기구 조정(신설1, 명칭변경4)

- 평생학습원(4급 사업소) 신설
- 행정국 → 안전행정문화국(명칭변경)
- 주민복지국 → 시민복지국(명칭변경)
- 안전도시국 → 도시주택국(명칭변경)
- 문화체육관광본부 → 대부해양관광본부(명칭변경)

○ 5급 기구 조정(신설3, 명칭변경4, 국 재편9)

-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 신설
- 도시주택국 內 주택과 신설
- 대부해양관광본부 內 대부개발과 신설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안전행정문화국 안전사회지원과(국 재편, 명칭변경)
- 행정국 평생교육과 →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국 재편)
- 주민복지국 일자리정책과 →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국 재편)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 안전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국 재편)
-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 시민복지국 체육진흥과(국 재편)
- 5급 사업소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는 4급 사업소 평생학습원으로 재편(국 재편)
- 정책기획과 → 기획법무과(명칭변경)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디자인과(명칭변경)
- 시민공원과 → 공원과(명칭변경)

○ 소관사무 추가

- 투자유치과에 마이스산업 업무 추가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19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 의견있음(일부반영)

○ 입법예고 : 2014. 11. 5. ~ 11. 12.(7일간)

○ 제출의견

- **문화예술과 국(局) 재편(안전행정문화국→복지여성국)**
  ⇒ 업무성격, 국 간 업무량 형평성 감안 미반영
- **외국인주민센터 국(局) 재편(복지여성국→안전행정문화국)**
  ⇒ 2013.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서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업무성격 감안 '14.4.1. 조직개편시 주민복지국으로 재편된 부서로 미반영
- **대부해양관광본부를 해양관광본부로 명칭 변경**
  ⇒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소로, "대부" 명칭 사용은 대부도 관광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음. 현 개편안 유지
- **복지여성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명칭 변경**
  ⇒ 여성정책 중요성 감안 "복지여성국"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을 포괄하는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민복지국"으로 최종 수정의결됨.

□ 기타 참고사항

○ 민선6기 조직개편안 확정 및 자치법규 개정 계획(총무과-28374, 2014.11.6.)